■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[별지 제43호서식] <개정 2019. 3. 20.>

[ ] 설정
납세관리인 [ ] 변경 신고서
[ ] 해임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

납세자	상호(법인명)		사업자등록번호	
	성명(대표자)		주민등록번호	
	사업장소재지		전화번호	
	주소(본점)		전화번호	
납세관리인	상호(법인명)		사업자등록번호	
	성명(대표자)		주민등록번호	
	사업장소재지		전화번호	
	주소(본점)		전화번호	
변경 전 납세관리인	성명(법인명)		주민등록번호(사업자등록번호)	
	주소(본점)			
설정(변경・해임)이유				
납세관리 세목	[ ]모든 세목 [ ] 소득세 [ ] 법인세 [ ] 부가가치세 [ ] 상속세・증여세 [ ] 그 밖의 세목 (세)			

위와 같이 납세관리인을 설정(변경・해임)하였으므로 「국세기본법」 제82조 및 각 세법에 따라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납세자 (서명 또는 인)

납세관리인 (서명 또는 인)

세무서장 귀하

첨부서류	납세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(설정・변경 시에 한정하며, 외국인의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습니다)	수수료 없음

210㎜×297㎜[백상지 80g/㎡(재활용품)]